

비교법제 연구 10-14-1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이준호 · 김범준



The Study on Legislation and Policy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UAE

연구자 : 이준호(부연구위원)

Lee, Joon-Ho

김범준(부연구위원)

Kim, Beom-Joon

2010. 7. 1.



| | | | |
|---|------------------------------|-----|-----------|
| 제 목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법제와 정책 연구 | | |
| 부 서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 연구진 | 이준호 · 김범준 |
| <p>[국 문 요 약]</p> <p>□ 연구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플랜트 수주를 하게 된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개발에 관하여 관련 법제와 기본정책의 연구 필요성으로, 이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원자력개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UAE의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반 제공 및 사전 준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p>□ UAE의 원자력개발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개발의 안전성 확보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개발의 6원칙 확립에 의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평화적 이용 기준 확립 -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법제도적 정비 진행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책임성있는 국가와의 원자력 개발 협력 추진 ○ 국제적 기준의 엄격한 준수와 IAEA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국내 원자력 개발에 관한 국제기준 (IAEA규범 등)의 대폭 수용 - 관련 국제협약 및 공조체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국제기준은 외국 원전플랜트 수주 심사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작용 ○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 및 자본 유치의 활성화 도모 | | | |

- 지분참여를 통한 합작투자협정 권유로 원자력개발에 관한 자본·산업기술 정착화
- 조세부담 경감과 이중과제 방지를 통한 국제적 투자유치지역의 인프라 구축

PART I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 최근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아랍 에미리트 (이하, UAE)는 이미 2008년부터 이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UAE 정부발행 정책보고서(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를 통하여 향후 진행될 UAE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다음과 같은 6원칙을 발표하였음.

1.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2.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구축
3. 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4. IAEA와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하여 평화적인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5.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도모
6.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발전에너지 프로그램 시도

□ 현재 UAE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은 6원칙을 원자력발전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여, 원자력 분야의 제도개선과 재정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음.

PART II :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 합작투자란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자연인, 회사 또는 단체 간의 경제적 또는 사업적 연합을 의미함.
 - UAE에서의 합작투자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 소유회사(jointly owned company)’,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기업연합(syndicate)’ 등 복수의 회사 또는 자연인 간의 계약상의 결합을 의미하는 어떠한 표현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파트너의 선택과 투자의 범위 및 사업시행 이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숙고가 필요함.
- UAE는 회사법제, 조세제도, 토지이용 관계, 은행체계 등 규제적·지리적으로 합작투자 사업을 위한 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임.
 - 우호적인 법제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샤리아 법(Sharia's Law)의 존재나 회사의 형태에 있어서 서구 일반의 개념과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ART III :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나 회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조세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필수적임.
- UAE는 대인세(對人稅; personal taxation)나 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의 부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처로서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임.
- UAE에서는 개인이나 회사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과되지 않고,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과 같은 극히 소수의 산업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과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관대한 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음.

- 결론적으로 UAE는 대인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자와 영업활동의 전망은 대단히 밝음.

※ 키워드 : UAE의 원자력개발, 원자력개발의 6원칙, UAE의 합작투자법제, UAE의 조세법제, 원자력개발의 안전성

Abstract

PART I : The Basic Policy of the UAE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 In recent,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an order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fact, the UAE has had a plan for it since 2008 and declared the following six principles through a government publication-- "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1. The UAE is committed to complete operational transparency.
2. The UAE is committed to pursuing the highest standards of non-proliferation.
3. The UAE is committed to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and security.
4. The UAE will work directly with the IAEA and confirm to its standards in evaluating and potentially establishing a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5. The UAE hopes to develop any peaceful domestic nuclear power capability in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s and firms of responsible nations, as well with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expert organizations.
6. The UAE will approach any peaceful domestic nuclear power program in a manner that best ensures long-term sustainability.

□ Currently, the government of the UAE proceeds the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its legal system as well as procurement of finance on the basis of the above six principles.

PART II : The UAE's Legal Framework on Joint Ventur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 joint venture is an economic cooperation or business combination of two or more people, companies or associations with a common economic goal.

- The term of 'joint venture' is interchangeable with a jointly owned company, a general partnership, a limited partnership, a syndicate and any number of other descriptions where there is an economic union of interests into a single entity.
- It is a necessity to examine and consider some basic issues before undertaking project(s) such as choosing joint venture partner(s), the scope of investment and so on.

The UAE has 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in commercial companies law, tax law, real property law and banking system as well as well-advanced infrastructure to operate joint venture project(s)

- It is also ne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Sharia's Law and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company from that of western countries.

PART III : The UAE's Tax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deciding whether to invest or locate business operations in a territory,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local tax regime is vital.

The UAE is a very attractive to invest and/or operate businesses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levy personal and corporate tax.

□ There is very little personal and corporate taxation in the UAE. In addition, the UAE is a party to numerous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reaties, which are aimed at avoiding instances of tax being payable by a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same matter in the UAE and other jurisdictions.

※ **Key Words** :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UAE, The Six Principles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he UAE's Legal Framework on Joint Ventures, The UAE's Tax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he Safety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목 차

| | |
|---|-----------|
| 국문요약 | 3 |
| Abstract | 7 |
| PART I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 | 15 |
| 1. 개 요 | 15 |
| 2. UAE 원자력발전의 6원칙 | 17 |
| ■ 제1원칙 :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 17 |
| ■ 제2원칙 :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추구 | 20 |
| ■ 제3원칙 : 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 25 |
| ■ 제4원칙 : IAEA와의 직접적 제휴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 27 |
| ■ 제5원칙 :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의 발전 | 28 |
| ■ 제6원칙 :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시도 | 31 |
| 3. 원자력개발에 관한 UAE의 국제적 노력 | 34 |
| ■ 개 요 | 34 |
| ■ 안보와 비확산(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 34 |
| ■ 안전성(Safety) | 37 |
| ■ 핵원료에 대한 책임성 (Liability) | 37 |
| 4. UAE 원자력개발에 관한 법적 쟁점 | 38 |
| ■ 개 요 | 38 |
| ■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안전, 안보, 비확산, 책임성, | |

| | |
|---|----|
| 기타 입법적·규제적·상업적 분야 등)를 포괄하는 법적 구조의 발전 | 39 |
| ■ 독립적·효율적 규제기관 설립 | 40 |
| ■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협정 (joint-venture arrangements) | 43 |
| ■ 공공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 44 |
| 5. 결론 및 시사점 | 45 |
| ■ IAEA와의 긴밀한 협조 | 45 |
| ■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 45 |
| ■ 예산확보의 노력 | 46 |
| ■ 인적자원의 개발 | 46 |
| ■ 합작투자협정에 의한 투자유인 활용 | 46 |
| ■ 지속적인 관련 법제의 개선 추진 | 47 |
| 별첨 1: UAE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 49 |
| 별첨 2: UAE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 53 |
| 별첨 3: 원자력 관련 UAE의 체결 또는 체결진행중인 국제협정 ... | 55 |
| 별첨 4: UAE의 법인설립 형태 등 | 57 |
| 별첨 5: 2009년 「원자력평화적이용법」에 관한 주요 내용 | 63 |
| PART II :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 65 |
| 1. 서 론 | 65 |
| ■ UAE에서 합작투자의 의미 | 65 |
| ■ UAE에서 합작투자의 활용 | 66 |
| 2. UAE에서 합작투자 관련 법제의 쟁점 | 67 |
| ■ 개 요 | 67 |

| | |
|---|----|
| ▣ UAE 상사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의 구체적 내용 ... | 68 |
| ▣ 합작투자회사로서 선택 가능한 UAE의 회사 유형 | 72 |
| ▣ UAE에서 합작투자와 관련된 토지 이용 | 73 |
| ▣ 부동산 합작투자(Real Estate Joint Venture) | 74 |
| ▣ 제조업 합작투자(Manufacturing Joint Venture) | 74 |
| ▣ 합작투자 대상지역으로서의 UAE | 75 |
| 3. UAE에서 합작투자협정의 진행 | 78 |
| ▣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택 | 78 |
| ▣ 합작투자의 범위에 관한 협상 | 79 |
| ▣ 합작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 81 |
| ▣ 국제 합작투자사업에서의 고려 사항 | 84 |
| 4. 결 론 | 86 |
| | |
| PART III :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 87 |
| 1. 개 요 | 87 |
| ▣ UAE의 조세제도 개요 | 87 |
| ▣ UAE의 경제 현황 | 88 |
| 2. UAE 조세법상 조세의 종류 | 88 |
| ▣ 세금우대지역으로서의 UAE | 88 |
| ▣ 대인세 | 90 |
| ▣ 법인세 | 90 |
| ▣ 재산세 | 93 |
| 3. UAE에서의 조세분쟁해결과 면세지역 | 93 |
| ▣ 조세분쟁의 해결 | 93 |

| | |
|-------------------|----|
| ▣ UAE의 면세지역 | 94 |
| 4. 결 론 | 95 |
| 참 고 문 헌 | 97 |

PART I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1.

□ 최근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아랍 에미리트(이하, UAE)는 이미 2008년부터 원전건설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¹⁾ UAE 정부발행 정책보고서(**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²⁾를 통하여 향후 진행될 UAE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다음과 같은 6원칙을 발표하였음.

※ UAE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6원칙

1.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The UAE is committed to complete operational transparency)

2.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구축

(The UAE is committed to pursuing the highest standards of nonproliferation)

3. 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The UAE is committed to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and security)

1)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서 한전건설이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건설사업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한전건설사업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연료,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원전수주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지원, 연료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으로 발전소의 설계·구매·시공, 시운전, 연료공급 등 건설부문의 계약금액만 약 2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원전건설 후 60년의 원전수명기간 중 원전운영사의 운전, 기기교체, 연료공급 등 운영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00억불의 추가 수주가 예상됨.

2) 동 보고서는 2008년 4월 23일 UAE 정부 “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이 있을 후에 2008년 4월 20일에 발표되었음.

4. IAEA와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하여 평화적인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The UAE will work directly with the IAEA and confirm to its standards in evaluating and potentially establishing a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5.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도모

(The UAE hopes to develop any peaceful domestic nuclear power capability in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s and firms of responsible nations, as well with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expert organizations)

6.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시도

(The UAE will approach any peaceful domestic nuclear power program in a manner that best ensures long-term sustainability)

□ 현재 UAE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은 6원칙의 내용을 동 보고서³⁾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천명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노력 그리고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보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⁴⁾

□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6칙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UAE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이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였음.

3) UAE Government, *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2008. 4. 20)

4) 현재 UAE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근거하여 상기한 원칙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UAE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별첨 1 참조.

2. UAE

6

■ 제 1 원칙 :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 UAE 정부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조업의 투명성 확보”가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제감독기구 및 국제단체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원자력에너지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였음.

□ UAE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의 6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조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쟁점 또는 단계를 구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제 1 쟁점(단계) : 관련 기구의 설립 및 운영
- 제 2 쟁점(단계) : 국제기구(IEAE)와의 긴밀한 협조
- 제 3 쟁점(단계) : 합작투자협정(joint venture arrangement)에 의한 투자유치
- 제 4 쟁점(단계)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교류

○ 제 1 쟁점(단계) : 관련 기구의 설립 및 운영

- “조업의 투명성 확보”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UAE 국내에서의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이용에의 평가 및 시행을 수행하는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조직 (Nuclear Energy Program Implementation Organization)”의 설립을 계획함.⁵⁾

5) 이러한 조직은 IAEA의 권고에 의하여 UAE 정부가 설립하도록 하였음. 동 조직의 설립에 관한 계획으로서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가 설립됨. 이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으로 설

-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정부부처 및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로 운영되는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를 설립하였음.⁶⁾
- ENEC는 UAE의 평화적인 원자력발전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평가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위임되었음.
- ENEC의 주요 기능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적자원과 기술 그리고 (핵원료의 수송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제 2 쟁점(단계) : 국제기구(IEAE)와의 긴밀한 협조

- 국제기구와의 협약 등과 관련된 의무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UAE 자국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IAEA와의 사전적인 검토를 공조함.
- 국제기구와의 협약상 의무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내용의 국내법적 수용을 시도하고, 이에 관한 원자력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법의 초안작업을 착수.

○ 제 3 쟁점(단계) : 합작투자협정(joint venture arrangement)에 의한 투자유치

- 원자력발전에 관한 “조업의 투명성 확보”를 달성하고 원자력 발전시설의 건설과 유지·운영을 위하여,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협정(joint venture arrangement)을 제안⁷⁾

립되고, UAE 국내에 설립가능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6) UAE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정부기관에는 UAE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아부 다비수전력청(ADEWA : Abu Dhab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두바이수전력청(DEWA : 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샤자수전력청(SEWA : Sharjah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연방수전력청(FEWA : Federal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등이 있음. 이에 관하여는 별첨 2 참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과 유지·운영에 관한 국제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제휴는 UAE의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완전하면서도 지속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UAE 정부는 투명성있는 기업과의 제휴를 위하여, 기업이 안전성에 관한 우수한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⁸⁾의 가입국으로서 동 조약에서 요구하는 안전협정의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 제 4 쟁점(단계)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교류

- 보건 및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7) 합작투자란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자연인, 회사 또는 단체 간의 경제적 또는 사업적 연합을 의미함.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위험과 이윤의 공유는 각 파트너가 당해 프로젝트에 기여한 전문지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됨. 합작투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대개 이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합작투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한 기한(a preliminary phase) 내에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그 다음의 단계(another phase)가 진행되거나 항구적인 단계(permanent phase)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8) 1966년 후반부터 군비에 관한 미·소의 협상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소의 양국가간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음.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음.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음.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며,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 IAEA에 탈퇴선언을 제출하였음.

시민사회에서의 수용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중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공개와 관심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추진.

- 이를 위하여 정부 및 전문가 집단 그리고 주변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투명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류를 도모하고 있음.

■ 제 2 원칙 :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추구

□ 개 요

- UAE 정부는 “조업의 투명성”과 최고수준의 비확산 기준 확립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시행이 서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1995년 NPT 협정을 승인**.
- UAE 정부는 기존의 비확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유엔안보리 결정 1540**”⁹⁾에 의거한 의무의 수행을

9) UN 안보리 결의 1540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자간 협약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 결의문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국은 WMD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로든 지원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제1조),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비국가행위자가 특히 테러 목적으로 WMD 및 그 운반수단을 제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과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하여 지원하며,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적절한하고 효과적인 법률들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2조). 구체적으로 전략물자의 적절한 통제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국내 통제 체제를 창설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여 시행하고 그와 같은 목적 아래 다음 사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3조). (a) 생산, 사용, 비축, 운송 중에 있는 전략물자의 책임관리 및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개발과 유지관리, (b) 적절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 조치의 개발과 유지관리, (c) 불법거래 및 증개행위의 탐지, 저지, 방지 및 소탕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경통제(border control)와 법집행(law enforcement) 노력의 개발 및 유지, (d)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및 환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를 창설, 발전, 검토 및 유지할 것. 여기에는 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그러한 제품의 수출 및 환적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제하는 적절한 법률 및 규정, 최종 사용자 통제, 그러한 수출통제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가적 조치 시행
- 핵무기 확산에 대항하는 미래지향적 기술과 설비의 선호 및 지원
- 신뢰성있는 외국 공급자의 공급에 의한 1차 연료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농축과 재처리 금지
- 국내 재가공처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관행과 기준을 반영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발전

-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가적 조치 시행
 - 현재 핵무기에 의한 대량과괴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국제협약 및 비확산조치들에 의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UAE 정부는 비확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자국의 안전과 국제적인 평화를 위하여 UAE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동에서의 대량과괴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의 존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NPT(1995)와 “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2003)” 그리고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2005)” 등을 승인하면서, 전력생산의 일부로서의 원자력 발전개발 이전에 비확산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선행하였음.¹⁰⁾

법률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처벌 체계의 구축 및 집행 등이 포함됨. (산업연구원, UN 안보리 결의 1540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2005 참조)

10) 이에 관련하여,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Prevention the acquisition by terroris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sources) 결의안”은 테러 위협과 테러범들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 거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2005년 채택된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 결의안은 회원국가들에게 테러범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핵발전소와 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에 따른 방사성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상기한 국제협정에 대한 승인 이전에 비확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조치를 단행하였음.
 - “유엔안보리 결정 1540(2004)”의 입장에서 사인에 의한 원자력개발과 생화학무기의 개발을 금지하는 등의 UAE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는데, 가장 의미있는 입법작업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정 1540(2004)”의 내용을 반영하여, UAE의 수출통제영역을 강화하였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2007년 8월에 “Federal Law No. 13 (2007)”¹¹⁾에 의하여 통제절차에 의한 수출입통제를 받아야 할 품목들을 규정하였음.
 - 동법은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기술 포함)” 및 UAE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통제절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National Commission for Commodities Subject to Import, Export and Re-export Control”라는 새로운 통제감독기관의 설립을 규정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사능물질의 비확산에 대한 감독과 이에 관한 제조, 보유, 취득, 이송, 테러목적의 무기화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s)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보될 것이 요구됨.
- ① IAEA의 협력을 통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성과 폐기물에 관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발전

11) 동 규정은 우선적으로 “National Commission for Commodities Subject to Import, Export and Re-export Control”이라는 새롭게 설립된 국가기관에게 수입과 수출 그리고 재수출뿐만 아니라 수송 등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 및 공중보건 그리고 환경적 문제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동 국가기관에 대하여 수입과 수출에 관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준수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외에 동 규정에서는 UAE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통관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국가와의 중계 또는 위임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② IAEA의 협력을 통하여 핵원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보호와 안전성 추구
 - ③ 우호국가간에 있어서 수출에 관한 모니터링
- 핵무기 확산에 대항하는 미래지향적 기술과 설비의 선호 및 지원
- UAE 정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방지와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설비에 주목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 UAE 정부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연료순환기술 등의 기술을 중시하여 가능한 한 사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분야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신뢰성있는 외국 공급자의 공급에 의한 1차 연료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농축과 재처리 금지
- UAE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UAE 영토 내에서 이용되는 경우,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는, 핵원료의 연료순환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함.
 - 우라늄 농축이나 재가공시설의 경제성이 높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위한 연료소비 등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간섭이 매우 높기 때문에,¹²⁾ UAE 정부는 국내에서 핵원료의 농축과 재처리 분야의 발전을 시도하지 않을 계획임.
 - UAE 국내에서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있어서, UAE 정부는 핵연료의 안전한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12) 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 플루토늄 핵무기의 경우보다 훨씬 더 소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소형화된 특징으로 인하여 농축우라늄 핵무기는 훨씬 더 확산될 위험이 높고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함.

신뢰성있는 정부 및 계약상대방과의 장기적인 협정을 추구하고 있음.

□ 국내 재가공처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관행과 기준을 반영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발전

- 단기간의 연료저장의 경우, UAE 정부는 안보와 안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연료의 공급 또는 연료소비의 안전에 관한 장기 협정을 추진할 때에 농축과 재처리를 제외하는 내용을 선호하고 있음.
- 장기간 UAE 국내에 핵연료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장기 연료 소비시설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국제안전기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여 운영됨.¹³⁾
- 폐기물처리와 임시보관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단계에서 요구되는 안전처리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수행하며, UAE 정부가 외국 공급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UAE 국가영역 밖에서 모든 재처리과정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수행됨.

13) 관련된 국제규범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결의안이 있음. 이 결의안은 방사성 폐기물이 전쟁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아프리카에 핵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투매를 우려하며, 1990년에 채택된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행동강령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을 환영하고 있음. 방사성 물질을 운반(shipping)하는 국가는 검색 요청이 있을 때 운반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핵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제 3 원칙 : 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 개요

- UAE 정부는 어떠한 원자력 에너지 발전 프로그램이라도 안전과 안보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과 안보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핵연료의 유출 등과 같은 피해의 방지가 중심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함.
- 일상적인 운영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과 절차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방지에 있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함.
- UAE 정부는 자국내의 모든 원자력 에너지 발전 프로그램이 안전과 안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관리기준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감독당국에 의하여 책임성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수준의 기준에 의한 운영
- 테러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시설, 수송기반시설, 보관 시설 등을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설보호와 필요경계의 확립

□ 원자력 발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에 의한 운영

-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UAE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수준의 기준을 근거로 운영하려 하고 있음.

- 안전조치는 수많은 규제요건으로 구성된 안전설비와 긴급시의 대처방안 등의 수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우발적인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됨.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자기감독(Self-oversight)의 실행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프로그램상 운영자가 스스로 운영하게 되지만,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질적 통제를 향상시키고, 다른 방안으로 핵시설의 운영에 관한 외국파트너와의 합작투자협정을 추진함.

□ 테러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시설, 수송기반시설, 보관시설 등을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설보호와 필요경계의 확립

- 실질적 방사능 유출을 발생시키는 시설내의 태업(Sabotage)이나 외부공격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UAE는 내외부적인 위협을 고려하여 안보상황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UAE의 “Ministry of Interior”는 다른 에미리트의 “General Police Directorates”와 협력하여 국가간의 안보에 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 설립된 UAE의 “National Security Council”은 지속적인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UAE 이외의 다른 국가의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최근에는 주요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위하여 아부다비에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uthority (CNIA)”가

설립되었으며,¹⁴⁾ 이 기관은 주요 공항 및 항만 시설과 다양한 전력생산발전소 및 기반시설 등과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안보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에 관한 평가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제 4 원칙 : IAEA와의 직접적 제휴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 UAE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IAEA와의 공조를 우선적으로 시도했는데, 사실상 UAE 정부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칙들은 모두 IAEA의 기준과 최선관행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UAE 정부는 IAEA에서 제시한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의 권유사항에 근거하여 모든 고려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UAE 정부는 IAEA의 회원국으로서, 1989년 “IAEA Revised Supplementary Agreement Concerning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¹⁵⁾에 가입한 이후로, 안전조치와 물리적 보호 그리고 안전성뿐만 아니라 기술과

14) CNIA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uthority)는 아랍 에미리트(UAE) 수도인 아부다비를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아부다비 2030” 계획에 따라 2007년에 새롭게 설립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기관 국가보안 및 방위를 담당함. “아부다비 2030” 계획 (The Plan Abu Dhabi 2030)은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 정부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장기 도시개발계획으로 아부다비를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음.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개발계획, 경제 산업 다각화, 민간 부문 육성 등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임.

15)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1월 3일 비엔나에서 서명하여 1980년 1월 21일 발효된 협정임. 우리나라 정부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하여 이용되며, 특히 이러한 지원이 핵무기의 제조, 여하한 군사적 목적의 추진 및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 시험, 제조와 같은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그리고 IAEA 이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에서, IAEA 규정 제12조 가항에 규정된 IAEA의 안전조치 권리 및 책임은 본 협정과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 정부와 기구간에 발효하고 있는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승인된 지원을 이행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구간에 체결될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수행됨.

운영에 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IAEA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왔음.

□ 또한, 특별한 기술적 지원영역 이외에, 법적 규제구조와 규제기관의 설립 그리고 기타 다른 영역에 관한 사항에서도 IAEA에 의한 상호검토를 받아 왔음.

■ 제 5 원칙 :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의 발전

□ 개 요

- UAE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책임성있는 국가 및 기업과 협력을 유지하였는데, 현재까지는 걸프지역의 오일산업에 있어서만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지하고 있었음.
-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UAE 정부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조직적인 전문성 그리고 투명한 사업관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적인 파트너에 대한 접촉을 지속할 계획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대 정부 수준의 지원
- 사적영역의 수준에서 상업적이고 투자적인 기회의 창출
- Gulf Cooperation Council¹⁶⁾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16) 페르시아만협력회의로서 걸프협력회의라고도 함. 1979년 2월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붕괴,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발발 등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모여서 결성한 단체임.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함.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결

□ 정부 대 정부 수준의 지원

-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UAE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UAE 정부는 전반적으로 정부 대 정부 수준의 지원에 의존하고, 이런 협력관계는 기술적이고 규제적인 협력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개입이 포함된 협의를 통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됨.

□ 사적영역의 수준에서 상업적이고 투자적인 기회의 창출

- UAE에서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원자력발전 시설 등은 국제 시장으로부터 유입하게 되며, 시설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합작투자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¹⁷⁾ 이러한 경우 투자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업 등에 대하여 많은 분야에서 이익창출의 기회가 발생하게 됨.
- 전문적인 인력풀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UAE 정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설계, 건축, 운영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상업적인 기회에 관하여 외국기업 및 UAE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행할 계획임.
- 운영협정 및 경제적인 지원에 의하여 국제시장에서 원자력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시설유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UAE

성 이후 10년 동안 활동의 중심은 정치·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협력에 있었음.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공동방위력의 증강 등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음.

17) 동등하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합작투자 파트너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당사자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재정적 위험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주력 사업부문이 아닌 사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분할하여 합작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일부는 기존의 성공한 상품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이나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작투자를 선택하기도 함. 합작투자사업 형태는 사회기반시설, 발전소, 공장, 관광산업 또는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관한 감독에 대하여 여전히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외부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 또는 운영 및 소유의 형태와 관련없이, UAE 정부는 모든 행위에 관한 감독에 있어서 국가적인 책임을 부담함.

□ Gulf Cooperation Council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UAE 정부는 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GCC 내에서 운영되는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을 위하여 GCC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유지함.¹⁸⁾
- UAE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이 핵비보유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18) 페르시아만협력회의(GCC) 국가들은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거의 60%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최근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원자력의 사용에 의해 물과 전력을 자급자족하게 되면 경제의 안전보장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며,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도 GCC 지역 내에서 창출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GCC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에 관하여 연구개발 기반이나 훈련된 숙련 전문가, 훈련시설, 기술기반 등을 갖고 있지 않음. 또한, GCC 국가들이 원자력 이용을 선택할 때, 큰 문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핵확산의 위험성임. 현재 중동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기술의 인근 국가들로의 확산과 페르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장래 일어날 수 있는 핵병기 개발 문제임. 그러나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이나 기타 서유럽 국가들, 러시아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이것은 GCC 국가들은 장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을 고려하는 확실한 경제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GCC 가맹국 6개국 모두가 핵확산 방지 조약에 이미 서명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GCC는 페르시아만에서의 원자력 이용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는 정식 보고서 작성을 IAEA에 요청함. GCC 가맹 6개국은 IAEA에 대해 GCC 전체의 전력수요가 연간 5-7%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달함. 이 급속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원자력을 선택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ehome.konetic.or.kr/> 참조)

■ 제 6 원칙 :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시도

□ 개 요

-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은 향후 UAE가 사용할 기본적인 전력을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지원 유지와 국제적 최선관행의 부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실행계획의 단계적인 세부적 내용 고안
- 사전적인 시설확장(Grid Expansion)과 사전실행계획 등의 조정
- 폐기물처리와 시설해체 책임에 대한 재원확보
- 인적자원의 개발과 재원조달

□ 실행계획의 단계적인 세부적 내용 고안

- UAE 정부정책을 실질적인 협정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원자력에너지의 발전과 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UAE 정부는 인지도있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임.¹⁹⁾

19)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2010년 2월 22일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 국제자문위원회(IAB)를 설립하였음. 2월 23일 UAE 경제지 “에미레이즈 비즈니스 24/7”은 UAE 대통령 행정사무처가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등 9명의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을 IAB의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보도했음. IAB는 비확산, 통제업무,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원자로 운영, 핵 폐기물 관리, 인적자원 개발 등 원자력 발전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지난 1981~1997년 IAE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한스 블릭스 박사가 맡음. 그 외 자크 부샤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토마스 그래험 美 라이트브릿지(Lightbridge) 회장, 타쿠야 하토리 일본원자력산업포럼 회장, 바바라 저지 英 원자력청 회장, 무지드 카지미 MIT 교수, 주카 락소넨 핀란드 원자력 안전청장, 존 로즈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英) 등 8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동 신문은 IAB가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

- 사전적인 시설확장(Grid Expansion)과 사전실행계획 등의 조정
 - 상업성있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시설면에서 에너지 변환라인과 시설간 상호연결 그리고 저장소 등이 통합체로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변환시스템제한과 수용가능성 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시설확장(Grid Expansion) 및 사전실행계획 등을 준비함.

- 폐기물처리와 시설해체 책임에 대한 재원확보
 -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전용재원의 창출이 시설해체에 있어서의 재원조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조달은 운영자로부터의 수입과 전력요금에 대한 징수 그리고 정부보조금 및 재원운영에 의한 이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으로부터의 조달이 가능해야 함.

- 인적자원의 개발과 재원조달
 -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프로그램의 유지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이 주목됨.

 -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UAE의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은 향후 인력조직의 요건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관리 전략에 주력하고 있음.

 -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UAE는 IAEA의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유사항을 따르고 있음.²⁰⁾

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UAE 원자력 프로그램에 최고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AB는 연 2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UAE 원전 프로그램이 안전과 안보, 비확산 등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정례보고서를 검토하게 됨. (아시아경제, 2010년 2월 24일자 기사 참조)

- 권유사항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 사전적으로 배치되어져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UAE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건축과 운영 이전에 인적자원의 개발 및 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최초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전용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UAE 정부는 핵시설의 폐기와 관련된 재원조달기금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자와 조사관 및 감독관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용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조달기금을 구축할 계획임.

20) 동 보고서에서는 원자력개발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어서 3단계로 구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제1단계에서는, 해당국가에 있어서 원자력개발에 관한 환경의 적합성이나 국가인식 또는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원자력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의 전반적인 인지, 국가내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 외국의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시하도록 권유함. 제2단계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드에 관한 전문가와 자력을 갖춘 지역에 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체와 전문기술자의 확보, 공공에 대한 의견개진을 소통시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전문가의 확보, 원전건설의 규정과 기준을 발전시키고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규제전문가의 확보,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직원에 대한 교육, 허가를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유함. 제3단계에서는 원전시설의 유지와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확보, 전문성을 가지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규제전문가의 유지,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인사시스템의 확보, 관련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회 및 시스템의 증진 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IAEA,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 (2007), pp.42-44)

3. UAE

■ 개요

□ UAE 정부는 자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국제협정의 승인과 관련 의무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

□ 이미 UAE 정부는 UN의 핵확산금지조약(United Nations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NPT)과 IAEA의 핵안전협정(IAEA Safeguards Agreement)에 관하여 승인하였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음.²¹⁾

□ 이러한 지속적인 국제적 협의를 유지하는 이유는 관련 국제협정상 내용이 UAE 정부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원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원자력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선정하고 있음.

- 안보와 비확산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 안전성 (Safety)
- 책임성 (Liability)

■ 안보와 비확산(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 UAE 정부는 1995년 NPT에 가입하였고, 2003년 핵안전협정(IAEA Safeguards Agreement)에 조인하였는데,²²⁾ 국제사회에서의 핵비확산 노

21) 현재 원자력개발과 관련하여 UAE가 체결 또는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협정에 관하여는 별첨 3 참조.

22) 안전조치(safeguards)란 NPT 회원국이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되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신시

력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IAEA Additional Protocol to the Safeguards Agreement”**와 같은 주요 국제협정을 승인하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UAE 정부는 원자력 관련 시설과 기술의 유입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IAEA에게 공인된 시설 이외에 비공인된 시설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IAEA의 조사관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자갱신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유연화시키고 있음.**

□ 물리적인 보호(Physical protection)와 관련하여, 핵원료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에 있어서 **IAEA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을 승인함.**

□ 상기한 협약에 근거한 의무와 관련하여, UAE 정부는 **물리적 보호에 관한 범위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핵원료의 국내적 이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경간 국제수송에 있어서도 보호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핵원료에 대한 절취, 강취 그리고 원자력시설에서의 태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에 의한 형사처벌로 취급하고 있음.**

□ 핵원료 관련 거래의 통제와 관련하여, UAE 정부는 **수출통제영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원료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UAE 정부는 NPT에 의한 조치²³⁾를 시행하고 있음.**

키는 제반 절차를 의미함. NPT 조약 제3조에는 비핵국가가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 규정에 따라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체의 핵원료 물질이나 특수 분열성 물질의 생산에 대해 안전조치(Safeguard)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조항은 안전조치제도에 따르는 사찰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비핵국가가 평화적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도 이 조항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참조)

□ 수출통제의 적용을 받는 광범위한 범위를 유지·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UAE 정부는 Nuclear Suppliers Group (이하, NSG)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²⁴⁾ 핵원료 이동에 관한 NSG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하여, 핵원료 및 핵관련 시설·기술에 관한 수출입통제 규칙을 시행할 계획임.

□ 수출입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Federal Law No. 13 of 2007”에 의하여 수출입통제절차를 준수해야할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통제대상 품목에 핵원료와 기술 그리고 시설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음.

23) IAEA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the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4) 1974년 11월부터 미국 주도로 시작되어 일면 런던클럽으로 불리는 원자력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은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 성공, 석유파동으로 인한 제3세계 국가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고조, 프랑스와 서독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계약 등의 구체정세를 배경으로 구성되었음. 미국과 캐나다는 NPT 제3조 만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인도와 같은 또 다른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NPT에 근거를 두고 NPT 당사국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쟁거위원회 보다 강화된 원자력 수출통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NSG는 1978년에 당시 쟁거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프랑스를 국제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시키고 원자력 국제 거래에 보다 엄격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소련,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최대 회원국이 되어 민감한 원자력 품목을 수출할 때 부과할 조건(수입국의 평화적 이용보장, IAEA 안전조치 적용, IAEA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의 재수출 금지, 물리적 방호 조치 강구, 이전된 기술에 의해 건설된 시설도 IAEA 안전조치하에 둘 것)과 수출 통제 대상품목(Trigger lister 동일 : NSG Part.1)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IAEA 문서인 INFCIRC/254(London Guidelines)로 발표하였음. 이후 NSG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1990-1991년 걸프전 당시 발견된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은 NSG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서방세계로부터 들어온 많은 이중사용 품목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품목 통제(NSG Part.2)도 통제대상 품목으로 1992년에 채택되었음. 현재 NSG 회원국은 32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95년 10월에 가입하였으며, 쟁거위원회와 비교하여 NSG가 갖는 의미는 핵무기 보유국이며,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참가했고 쟁거위원회 보다 통제범위를 한층 강화하였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http://www.kntc.re.kr/> 참조)

■ 안전성(Safety)

□ 핵비확산의무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UAE 정부는 모든 핵원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결과로서 IAEA에서는 “핵시설안전”과 “핵폐기물안전”에 관한 협약을 진행하였음.

□ 핵원료안전에 관한 IAEA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안전”과 관련하여, UAE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시설규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핵시설안전”을 시행하고 있음.

□ UAE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시설이 활용되는 경우, “IAEA Convention on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²⁵⁾ 연료소비와 방사능 폐기물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료소비와 방사능폐기물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방사능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방사능폐기물과 긴급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설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핵원료에 대한 책임성(Liability)

□ 현행 UAE의 국내법적인 보상체계에 의하여 원자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취급하는 것은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의한 위험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됨.

25) 동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계약국에 부과함. ① 폐기물 등 안전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한 국별 보고서를 검토회합전에 제출할 것, ② 서면에 의한 질문 및 회답에 의하여 다른 계약국의 국별 보고서의 내용 확인을 할 것, ③ 그룹 토의 및 전체회합으로 구성되는 검토회합에서 국별 보고서를 설명하고 질의에 대응할 것.

□ 이러한 방사능누출은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방사능유출에 의한 피해는 상당한 기간 이상으로 지속적인 피해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음.

□ UAE 정부는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확립을 위하여 IAEA의 협약에 의하여 모델이 구축된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핵원료에 대한 책임성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UAE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함.

- 원자력발전 운영자에 대하여, 핵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완전한 법적 책임의 배타적인 전가
- 과실에 대한 입증없이 운영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
- 핵원료 사고가 발생된 국가들의 법원에 의한 배타적인 관할권
- 책임범위의 제한과 책임의 시간적 제한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
- 국적, 국내 거주 등에 근거한 차별없이 이루어지는 피해의 보상

4. UAE

■ 개요

□ 상기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UAE 정부는 원전건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제적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법제도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²⁶⁾

26) 참고적으로 UAE는 대표적인 이슬람권 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법률체계와 다른 이슬람 고유의 법령체계에 의한 법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즉, UAE를 포함한 이슬람권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의 율법에 의한 Shari'a법 체계에 의하여 법제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이라고 불리우는 Shari'a법은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전체적인 법체계를 의미함. 이러한 Shari'a법에는 상거래와 같이 세속적인 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슬람 교리에 근거한 종교법으로서만의 성격을 갖지는 않음. 따라서 종교적 규정을 초월하여 일반 민사법과 형사법 그리고

-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안전, 안보, 비확산, 책임성, 기타 입법적·규제적·상업적 분야 등)를 포괄하는 법적 구조의 발전
- 독립적·효율적 규제기관 설립
-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협정(joint-venture arrangements)
- 공공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안전, 안보, 비확산, 책임성, 기타 입법적·규제적·상업적 분야 등)를 포괄하는 법적 구조의 발전

□ UAE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원자력 분야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원자력 관련 국내법령의 초안작업을 수반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안전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개념화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UAE 원자력 관련 법령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음.

- 규제기관 및 허가기관의 설립
- 원자력 관련 책임성 (Liability)
- 운영자와 허가취득자의 책임
- 방사능 폐기물과 연료소비의 관리
- 원자력 시설 등의 해체
- 핵원료의 물리적 보호
- 비확산의무 및 통제와 시행

행정법이나 국제법 등과 같은 폭 넓은 영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강력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Shari'a법은 금융거래의 규제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슬람 금융의 일반적인 기본원리로서 ① 이자수수의 금지, ② 수익과 위험에 관한 공정한 분배, ③ 비도덕적인 거래에 대한 절대적 금지, ④ 자금축재의 금지 (자본퇴장의 금지), 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Shari'a위원회의 인증 요구 등을 거론할 수 있음.

□ 안보와 관련하여 원자력 관련 입법은 UAE 국가영역 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적 사용에 대한 위반자의 처벌을 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립적·효율적 규제기관 설립

□ UAE 정부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원자력에너지개발의 초석이라고 인식하여, UAE 자국 내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와 기반시설을 감독하는 효율적인 감독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독립성과 효율성을 통하여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UAE 정부는 규제기관의 권한에 IAEA가 권유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요건과 규정의 제정
- 허가권의 행사
- 시설 및 시설에 관련된 부속물의 조사와 평가
- 규정준수에 대한 감독과 시행
- IAEA 안전의무에 상응하도록 핵원료에 대한 “State System for Accounting and Control (SSAC)”의 정립

□ 허가의 범위와 허가권의 행사는 원자력 에너지개발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최선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s)과 부합하도록,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안전성에 대한 허가는 시설 건축, 확장, 통합, 운영, 폐기물관리, 시설보완, 시설해체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증의 발행절차는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 규제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조사권한(Inspection powers)은 체계적인 조사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²⁷⁾ 원자력 관련 모든 시설과 원자력 프로젝트 관련 계약자 그리고 관련 문건 등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이미 계획되었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고, 처리결과에 관한 모든 문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규제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국제협정의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입법적으로 규제기관에게 실행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적용규정의 시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취소·수정·연장 등을 인정하고 있음.

□ IAEA의 안전의무에 부합하도록 핵원료에 대하여 “State System for Accounting and Control (SSAC)”에 의한 감독은 원자력발전 감독의 또 다른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SSAC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측정시스템
- 정확성에 대한 평가시스템
- 측정의 차이를 검토하는 절차
- 물리적인 인벤토리에 관한 수행 절차

27) IAEA에 의한 조사 및 사찰은 다음과 같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의 핵관련시설에 대해 IAEA가 벌이는 사찰활동으로, 임시사찰, 통상사찰(일반사찰), 특별사찰 3가지가 있음. “임시사찰”은 NPT 가입국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 미보유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찰임. “통상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로 “일반사찰”이라고도 함. “특별사찰”은 임시,통상사찰을 통해서도 핵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행하는 것으로, 핵안정협정 제73조에 따라 IA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임. 내용은 임시사찰 결과 신고내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국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사찰을 통해 의심할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경우에 실시하여 핵개발 상황이나 핵보유 여부를 가리며, 1997년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는 신고시설 외의 모든 의심 시설들에 대한 핵사찰을 용의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고누락 및 은닉시설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별사찰 동의를 받아내는 대신 일반사찰의 형태로 사실상의 특별사찰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임.

- 측정되지 않은 인벤토리에 관한 평가시스템
- 모든 물질들의 상태에 대한 기록과 보고 시스템
- IAEA에 대한 보고 시스템

□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AE 정부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창설하고, 원자력 에너지 분야와 연료소비 및 방사능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된 운영자 및 허가취득자 그리고 정부 및 기타 단체들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연방규제기관의 운영을 도모함.²⁸⁾

- 인사에 관한 지명 체계
- 충분한 예산에 의한 독립성 확보
-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
- 정부로부터의 독립

□ 규제기관의 인사에 관한 임명체계는 지정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임명과정과 임무해태 또는 부정 등에 의한 해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자와 허가취득자는 규제기관의 인사임명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투명성이 보장된 국제 규제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규제기관에 영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28) 현재 UAE의 에미리트 원자력에너지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 ENEC)는 UAE 최초의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잠재적 부지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연방 원자력 규제국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 FANR)의 이사회는 심사를 거쳐 동 타당성조사 연구 인허가를 승인하였음. 이것은 UAE의 규제기관이 발급한 첫 인허가로서, ENEC는 이미 UAE 내 다수의 잠재적 부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음. 동회사는 부지선정 조사는 연방 원자력 규제국 설립 이전의 기존 UAE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함. UAE 관리 및 국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팀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진, 지질학, 환경영향 및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과학 및 안전성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ENEC는 이 같은 연구가 원자로를 건설할 최종 부지의 선정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음. 선정된 부지에 대한 적합성은 향후 원전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서 FANR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3.15) 참조)

4. UAE 원자력개발에 관한 법적 쟁점

□ 충분한 예산에 의한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규제기관에 관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부당한 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은 검토와 평가, 조사 또는 책임의 실행 등에 관한 업무진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고되는데, 규제기관이 일정한 경우에 기술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정보와 기술의 제공이 필요하게 됨.

□ 또한, UAE 정부는 규제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보고체계와 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협정(joint-venture arrangements)

□ 원유생산과 전력생산에 있어서 UAE 정부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적인 기업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²⁹⁾

□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에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있음.

□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한 수행은 정부와 국제기업간의 협

29) 1984년 연방법 No.8(회사법)은 UAE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로서 다음의 7개를 규정하고 있음. ① General Partnership, ② Simple Limited Partnership, ③ Joint Participation Venture, ④ Public Joint Stock Company, ⑤ Private Joint Stock Company, ⑥ Limited Liability Company, ⑦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일반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설립 형태로서 적합한 것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합작투자방식으로서 Joint Participation Venture의 방식도 많이 선호되고 있음. UAE는 회사법에 의하여 법인설립형태가 결정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설립 형태 및 합작투자 방식 이외의 회사설립에 관하여는 별첨 4 참조.

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거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 (IWPP)”는 UAE의 아부다비에서 성공적으로 수력발전시설을 도입하였으며, UAE 정부는 독립적인 사적 기업에 의한 전력생산시설의 운영을 허락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IWPP의 운영시스템에 의하여 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건축과 소유 그리고 운영이 정부와 다수의 국제기업 간의 합작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UAE 정부가 IWPP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은 40%를 보유하고 있음.

□ 이질적인 지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IWPP는 국제적인 기준과 규제감독의 기준을 충족·유지하였다고 평가됨으로써, UAE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공공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평가절차에 있어서 대중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의 중요성과 관련 결정은 일반 대중의 신뢰와 수용을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UAE 정부는 대중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

□ 다만, UAE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핵시설과 핵원료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 및 안보와 관련된 조치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필수불가결하게 민감한 정보로 취급되므로 정보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5.

■ 이상과 같이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UAE 정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UAE에 대한 원전수주 후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및 운영 그리고 원전건설 이후의 유지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IAEA와의 긴밀한 협조

□ UAE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력 개발의 이용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IAEA와 같은 국제적인 원자력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UAE 정부의 원자력개발에 관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수순한 에너지개발차원의 목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점이라고 판단됨.

□ 원자력발전소의 수주를 수행하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UAE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IAEA 등과 관련된 원자력기구와의 긴밀한 유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 상기한 바와 같이, UAE는 원자력 관련된 국제규범의 철저한 준수를 천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제개선내용 또한 국제규범의 협약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적으로 유입시키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UAE 국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국제적인 규범의 준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을 명확하게 하여 원자력발전

소 건설에 있어서, 국제규범의 미준수로 인한 손해와 장애를 예방하여야 할 것임.

■ 예산확보의 노력

□ UAE의 경우는 전체 국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개발에 투입하여, 향후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전력원으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특징적인 면은 원자력개발에 관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UAE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원전건설에 있어서도 좋은 여건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원전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집행된다는 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의 개발

□ UAE 정부는 원전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교육시키고, 이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UAE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건설과 시설운영 및 관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적자원의 확보에 관한 별도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합작투자협정에 의한 투자유인 활용

□ UAE 정부는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합작투자협정(Joint Venture Arrangement)에 의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러한 방법은 향후에도 많은 경우에 적용되어 활용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합작투자방식은 특유의 장점으로 인하여 선호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UAE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법제의 사전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UAE의 법제시스템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화된 준비로 진출을 시도하여야 할 것임.

□ 한편으로,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법인설립 이외에도 UAE법상 다른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법인설립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지속적인 관련 법제의 개선 추진

□ UAE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규범과 최선관행 등을 기본적인 근간으로 하여, 원자력개발에 관한 법제 및 정책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9년에도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는데,³⁰⁾ 이러한 법제개선의 노력과 법제도적 변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UAE의 원전건설 진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규범의 준수와 적용 뿐만 아니라, UAE 국내법의 변화 및 법제도적 개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법적용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30) UAE는 2009년에 「원자력평화적이용법」을 제정하여,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하기 이전 단계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원자력평화적이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별첨 5 참조.

별첨 1: UAE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 UAE의 원자력에너지발전 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은 미래에 요구되는 전력의 추가적인 에너지원의 필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목적에 있음.

□ UAE 정부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07년부터 연간 성장률을 대략 9%로 추정하였을 때에 2020년까지 요구되는 전력량은 40,000MW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주요 전력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0년에 20,000~25,000MW 정도밖에 생산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의 경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공급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UAE 정부는 이러한 천연가스와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원으로서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은 2020년에 전체 전력량의 6~7%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자체뿐만 아니라, 이용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여, 미래에 있어서 원자력에너지 시설의 예상되는 이용에 관한 평화적이며 명백한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음.

□ 또한, UAE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의 오직 일부만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미래에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체 전력에너지원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

※ UAE에서 천연가스 공급부족과 원자력개발의 필요성

○ UAE에서 원자력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 이유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현재 전력생산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석유회사가 그 전체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된 위기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두바이 최대의 민간 석유기업인 Emirate(Emirates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의 간부인 Khaled Al Awadi은, 2008년 2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Gas Arabia 2008” 컨퍼런스에서 UAE의 천연가스 공급부족

과 천연가스의 연료전환 가능성에 대한 발표에서, UAE에 있어서 가스공급의 위기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2007년 성수기에 1,000 Mmcf/d에 해당하는 가스가 부족하여 디젤유로 대체되었다고 함.

○ 가스의 공급부족은 전력 수요의 증대가 원인인데, UAE 정부에 의한 필요발전능력의 예측에 의하면, 2007년에는 13,224MW, 2012년에는 27,323MW, 2020년에는 40,858MW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가스소비 또한 연비율 10% 전후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고객을 가지는 대기업인 BMI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두바이상공회의소 (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위탁에 의하여, UAE의 전력에 관한 장래 예측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UAE는 향후 6년에서 8년사이에 전력수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80억달러(293억 디르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하였음.

○ 상기의 분석에 의하면 UAE 정부는, 현재의 발전능력이 50%이상이 되는 10,000~15,000MW(10~15 GW)의 시설을 향후 10년간에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바이 단독으로는 2010년까지 9,500MW의 발전능력이 필요하며, BMI의 예측근거는 2006~2011년의 5년간, 1인당 연비율 2%의 수요 증가로 계산한 것으로서, 전력 소비량은 2006년의 56.6TWh에서 2011년에는 82TWh가 된다고 함.

○ 2008년 기준으로 발전능력은, 두바이가 약 5,450MW, 아부다비가 약 9,400MW로서, 두바이는 2010년까지 5,000MW가 추가로 필요하고 1,700MMcf/d의 가스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 아부다비는 향후 5년간 매년 2,000MW의 발전능력증가가 필요하고, 대응되는 가스량은 매년 650MMcf/d가 증가되어야 함.

○ UAE의 천연가스 소비는, 2006년의 417억m³(4,035 Mmcf/d)로부터 2011년에는 601억 m³(5,815 MMcf/d)로 증가하고, 발전능력은 2006년의 57.6TWh에서 2011년의 83.1TWh 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진할 정책과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함으로써, 핵비보유 국가로서 국제공동체 사회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정립을 추구하고 있음.

※ UAE 원자력개발을 위한 조치 개요

○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정책 보고서 발표 (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 2008.4

○ 핵에너지 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e) 설치 및 운영 : 자본금 1억불, UAE 원자력에너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Nuclear energy program implementation office 역할

○ 원자력발전총괄기관 “핵에너지실행기구 (NEPIO)” 발족 : 2008.3

○ “원자력 관리기관(Nuclear Regulatory Agency)” 및 “국제 원자력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Nuclear Exports)” 설치 운영 추진

○ 외국기업에 대하여 합작투자(Joint Venture) 개방 : UAE 60% + 외국기업 40%

※ UAE 원자력개발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 현황

○ UAE-프랑스, 원자력협력협정 (Agreement) 체결 : 2008.1

○ UAE-미국,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협력 MOU” 체결 : 2008.4

○ UAE-영국,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협력 MOU” 체결 : 2008.5

○ 미국 Thorium Power Ltd-UAE, 2개의 컨설팅 계약 체결 : 2008.8

- ENEC Agreement : ENEC 운영 컨설팅 서비스

- FANR Agreement (Federation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 연방 원자력 관리기관 창설지원 FANR

○ UAE-미국, 원자력협력협정(Agreement) 체결 : 2009.1

별첨 2: UAE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 UAE 에너지 관련기관

- UAE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 에너지분야 정책수립 및 총괄
- 아부다비수전력청 (ADEWA : Abu Dhab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 아부다비주 수·전력 공급계획 수립 및 실행
 - UAE 발전설비 53% 보유
 - 수자원 및 전력 정책의 수립과 개발 및 실행
 - 아부다비 수전력회사 등 국영기업 소유
- 두바이수전력청 (DEWA : 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 두바이주 수·전력 공급계획 수립 및 실행
 - UAE 발전설비의 29% 보유
- 샤자수전력청 (SEWA : Sharjah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 샤자주 수·전력 공급계획 수립 및 실행
 - UAE 발전설비의 11% 보유
- 연방수전력청 (FEWA : Federal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 샤자주 수·전력 공급계획 수립 및 실행
 - UAE 발전설비의 7% 보유

별첨 3: 원자력 관련 UAE의 체결 또는 체결진행중인 국제협정

※ UAE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핵비확산 관련 국제협정

- IAEA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95)
- 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2003)
- IAEA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2003)
- UN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2000)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2005)

○ UAE 정부에 의하여 채택이 진행중인 핵비확산 관련 국제협정

- IAEA Additional Protocol to Safeguards Agreement
- IAEA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 NSG Export Guidelines

○ UAE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핵원료 안전성 관련 국제협정

- IAEA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1987)
- IAEA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1987)

○ UAE 정부에 의하여 채택이 진행중인 핵원료 안전성 관련 국제협정

- IAEA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 UAE 정부에 의하여 채택이 진행중인 핵원료에 대한 책임성 관련 국제협정

- IAEA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 IAEA Protocol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 IAEA Joint Protocol on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and Paris Conventions
- IAEA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별첨 4: UAE의 법인설립 형태 등

※ UAE의 법인 형태

1984년 연방법 No.8(회사법)은 UAE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로서 다음의 7개를 규정하고 있음.

- ① General Partnership
- ② Simple Limited Partnership
- ③ Joint Participation Venture
- ④ Public Joint Stock Company
- ⑤ Private Joint Stock Company
- ⑥ Limited Liability Company
- ⑦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일반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설립 형태로서 적합한 것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합작투자방식으로서 Joint Participation Venture의 방식도 많이 선호되고 있음

※ 회사설립 이후 주요 제한

- ① General Partnership : UAE 국민만 출자 가능
- ② Simple Limited Partnership : 경영권이 있는 무한책임사원은 UAE 국민만 가능
- ③ Joint Participation Venture : UAE 자본 51%이상, 의사결정은 출자자의 전원 일치 원칙
- ④ Public Joint Stock Company : UAE 자본 51%이상, 주주 최저 10명, 대표이사과 이사의 과반수는 UAE 국민
- ⑤ Private Joint Stock Company : UAE 자본 51% 이상, 주주 최저 3명, 대표이사과 이사의 과반수는 UAE 국민
- ⑥ Limited Liability Company : UAE 자본 51%이상
- ⑦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경영권이 있는 무한책임 사원은 UAE 국민만 가능

※ **합작투자방식 이외에 기타의 법인설립 방법**

- 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로서 활용되는 법인설립형태.
 - 다만, 은행, 보험, 투자 업무에 대해서는 이 형태로의 설립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일반적인 경우 “Public Joint Stock Company”로 설립됨).
 - 설립 인가는 각 에미리트의 정부 기관(두바이의 경우는 두바이 정부 경제개발국)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출자자는 최저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로 제한
 - 최저자본금의 경우, 두바이에서는 30만 디르함이며 다른 에미리트에서는 15만 디르함이고, 최저 액면 가격은 1,000 디르함이었는데, 2009년 8월 10일의 대통령령에 의하여 최저 자본금의 규정은 철폐되었음.
 - UAE 국민에 의한 출자가 51%이상 필요로 함.
 - 공모 증자는 불가
 - 경영권은 최대 5명까지의 임원에 의하여 운영가능한데, UAE 국민의 참가의무는 없음.
 - 현지의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
 - 일반적인 상관행으로서 UAE측의 출자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총회의결권도 외국자본에 위임되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내용의 결정은 통상 당사자간의 부대계약(Side Agreement)에서 명기되지만, 법으로 간주해지는 경우도 있음.
 - 설립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됨.
 - 상업 라이선스 (Commercial Licence) : 상거래 활동의 허가
 - 전문 라이선스 (Professional Licence) : 서비스업, 지적재산물산업 등의 활동을 허가
 - 공업 라이선스 (Industrial Licence) : 제조 활동의 허가

- 상기한 라이선스는 각에미리트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취득
- 일부의 산업에 대하여는, 연방 정부의 승인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제조업은 경제부, 의료 산업은 보건성 등
- 지 점
 - 모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되는 설립 형태로, 100% 외국인에 의한 소유가 가능.
 - 모회사의 사업활동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데, 금융이나 노동자 공급, 부동산 거래 등, UAE 국민에만 한정되고 있는 활동은 적용되지 않음.
 - 설립 인가는 각 에미리트의 정부 기관이 수행하고, 공식적인 등기가 필요.
 -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하게 라이선스 취득도 필요.
 - 지점설립에 있어서 UAE의 출자는 필요없지만, UAE 국민 또는 100% UAE 자본의 법인에 의하여, 보통 “스폰서”라고 불리우는 “서비스 대리인(Service Agent)”이 필요
 - 스폰서는 지점의 라이선스 취득이나 갱신, 지점 종업원의 비자취득 절차 등, 정부 기관에 관련된 사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출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상기한 사무적인 절차를 실시하는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수령.
 -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의 책임은 모회사가 부담.
 - 수출입, 소매 등의 활동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범위는 한정됨 :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개별의 인가에 근거함.
- 주재원 사무소
 - 지점과 같이 모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되는 설립 형태
 - 100%외국인에 의한 소유가 가능하지만, 모든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고, 모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계약 체결전의 활동으로 한정.
 - 설립 인가는 각 에미리트의 정부 기관이 실시하지만, 공시적인 등기도 필요.

- 주재원사무소의 주요활동으로서, 사무소의 개설, 부동산의 임대, 은행 계좌의 개설, 종업원의 고용 (인원수의 제한있음) 등이 있음.
 -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스폰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라이선스의 취득도 필요 (전문 라이선스).
- 전문 사무소(Professional Firm) 또는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
- 일부의 전문적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이라도 전문사무소(법률사무소 등) 또는 개인사업체(자영 기업)를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UAE 국민에 의한 스폰서는 필요하고, 직종에 의하여 여러가지 정부인가가 별도로 필요
 - 외국인이 전문사무소 또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의료서비스 제공, 엔지니어링·컨설팅, 법률 컨설팅, 컴퓨터컨설팅, 이들과 유사한 서비스 및 비영리 활동 등이 있음.
- 자유무역지대(Free Zone)내에서의 회사
- 자유무역지대(Free Zone)에서는 100% 외국인에 의한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비과세, 스폰서의 불요, 이익송금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이 자유지대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 법인설립 형태는 각각의 자유무역지대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법인설립 형태가 있음.
 - Free Zone Establishment (FZE) : 출자자는 1명, 최저 자본금은 100만 디르함
 - Free Zone Company (FZCO) : 출자자는 2명 이상, 최저 자본금은 50만 디르함
 - 외국 기업의 지점 : 모회사와 동일 법인으로 간주해지는 형태로서 최저 자본금은 없음
 - 설립된 기업은, 자사의 사업활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가 있음.(이하는 제이 벨·개미·자유 지대의 라이선스 형태).
 - 일반 상업 라이선스 (General Trading Licence) : 제품의 수출입, 판매, 보관을 실시하는 기업이 취득하는데, 자유무역지대의 외부에

서 판매를 하는 경우 현지의 판매업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함.

- 상업 라이선스 (Trading Licence) : 라이선스상에 규정하는 특정의 제품의 수출입, 판매, 보관을 실시하는 기업이 취득하고, 일반 상업 라이선스 같이 자유무역지대 외부에서의 판매는 현지의 판매업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함.
- 공업 라이선스 (Industrial Licence) : 원료 수입, 제조, 완성품 수출을 실시하는 기업이 취득하는데, 일상업 라이선스 같이 자유무역지대 외부에서의 판매는 현지의 판매업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함.
- 서비스 라이선스 (Service Licence) :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취득하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회사의 사업 활동과 동일한 것에 한정.
- 국가 공업 라이선스(National Industrial Licence) : UAE 또는 다른 GCC국가의 국민에 의한 출자가 51%이상으로, 제품 부가가치가 40% 이상이 되는 기업이 취득할 수 있으며, 원래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UAE의 지방기업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어 GCC국가에의 수출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지만, 현재는 자유무역지대내의 기업의 경우 다른 GCC국가에 있어서 관세가 면제되지 않음.

별첨 5: 2009년 「원자력평화적이용법」에 관한 주요 내용

※ 2009년 원자력평화적이용법 제정

아랍 에미리트의 하리파 대통령은 2009년 10월 3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09년 연방법”을 공포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원자력 에너지 부문의 평화적인 이용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IAEA 규정과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는 의무적 내용을 규정
- 2008년 4월에 공표된 UAE 국내에서의 우라늄 농축의 개발·시설건설·시설운전의 금지
- UAE 국내에서 사용이 완료된 연료의 재처리 금지를 포함한 평화적인 원자력 계획의 평가와 개발
- 원자력개발의 가능성에 관한 UAE의 정책 항목에 관한 규정
- UAE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의 책정을 위한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의 주요 공급국가와 IAEA와 밀접한 협의 실시
- 추가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UAE 연방 및 지방자치체간에 해당 법률의 준수 강중
- 제정된 안전 규제 메카니즘의 독립성 담보와 원자력 재정 기반의 안정성 유지 규정

PART II :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1.

■ UAE에서 합작투자의 의미

□ 합작투자란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자연인, 회사 또는 단체 간의 경제적 또는 사업적 연합을 의미함.

-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위험과 이윤의 공유는 각 파트너가 당해 프로젝트에 기여한 전문지식과 자산³¹⁾을 고려하여 결정됨.
- 합작투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대개 이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합작투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³²⁾
 - 일정한 기한(a preliminary phase) 내에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그 다음의 단계(another phase)가 진행되거나 항구적인 단계(permanent phase)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합작투자’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소유회사(jointly owned company)’,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기업연합(syndicate)’ 등 복수의 회사 또는 자연인 간의 계약상의 결합을 의미하는 어떠한 표현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31) 자산(asset)은 人的 자본(human capital)과 금전적 자본(monetary capital)을 모두 포함함.

32) 물론,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는 합작투자도 존재함.

- 단, 당사자 간에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단일한 법인을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이 있어야 함.
- UAE에서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는 하나의 상업적 실체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UAE 상사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제4편에 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UAE에서 합작투자의 활용

□ 합작투자는 1990년대 이후 모든 분야의 시장에서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로 발전하였음.

- 무엇보다 동등한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합작투자 파트너와 새로운 시장³³⁾에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당사자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설사, 재정적 위험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주력 사업부문이 아닌 사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분할하여 합작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일부는 기존의 성공한 상품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이나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작투자를 선택하기도 함.
- 합작투자사업 형태는 사회기반시설, 발전소, 공장, 관광산업 또는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함.

□ 합작투자는 규모에 있어서 한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고, 국제적일 수도 있음

33) 새로운 시장이라 함은 지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 측면의 새로운 시장도 포함됨.

2. UAE에서 합작투자 관련 법제의 쟁점

- 국제적인 규모의 합작투자의 경우, 각 각 다른 국가의 다수당사자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당해 합작투자 법인을 규율하는 법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참여자에게는 외국법에 해당함.

□ 본 보고서는 UAE에서의 합작투자에 있어서 특유한 측면을 일갈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의 합작투자와는 다른 법률상, 회계상, 사업상의 이슈 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UAE

■ 개 요

□ UAE에서 합작투자법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사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 관련 법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

□ UAE의 상사회사법에서는 합작투자법제 이외의 회사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은 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에미리트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음.

□ 상사회사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합작투자와 관련된 법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 UAE 상사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의 구체적 내용
- 합작투자회사로서 선택 가능한 UAE의 회사 유형
- UAE에서 합작투자와 관련된 토지 이용
- 부동산 합작투자(Real Estate Joint Venture)
- 제조업 합작투자(Manufacturing Joint Venture)

■ UAE 상사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의 구체적 내용

□ UAE 회사법³⁴⁾은 공동책임회사(joint liability companies),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ies), 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자회사(simple commandite companies; limited partnership)와 주식자본합자회사(share capital commandite companies)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UAE 회사법 제313조는 동 법은 UAE 내에서 주요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경영의 핵심부서를 두고 있는 모든 형태의 외국회사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 합작투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회사의 형태로 UAE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UAE 회사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음.

□ UAE를 연고지로 하거나 UAE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국제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다음의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
-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회사(Dubai Free Zone Companies)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주식합자회사(Share Commandite Company)

□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

- UAE 상사회사법³⁵⁾ 제4편은 UAE 내에서 활동하는 합작투자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4) The U.A.E. Companies Law Federal Law No. (8) of 1984, as amended by Federal Law No. (13) of 1988.

35) Federal Law No. (8) of 1984.

- 제56조는 합작투자를 “복수의 사업체가 이윤과 손실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자 구성원인 파트너가 되고, 그 중 1개사의 이름으로 형성된 회사”라 정의하고 있음.
 - 동조는 합작투자회사는 파트너들 간의 관계에 국한되며,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자는 합작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는 그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한 파트너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 제61조는 합작투자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상기의 의무를 감수하는 계약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 제56조를 수정하여 제3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57조에 의하여 합작투자회사의 합작투자계약은 각 파트너의 권리·의무와 이윤과 손실의 배분방식을 규율하지만, UAE의 법률 하에서 등록해야할 UAE의 상사계약은 아님.
- 제4편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지역 회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합작투자 파트너와 사업체의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UAE 내에서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합작투자회사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

□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회사(Dubai Free Zone Companies)

- 현재 두바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회사(Free Zone Company; FZCO)는 제블알리 자유무역지대 회사(Jebel Ali Free Zone Company)³⁶⁾임.
- 제블 알리 자유무역지대 회사는 지역회사(local company)³⁷⁾에 적용되는 UAE와 두바이의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36) 합작투자의 맥락에서 FZCO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로서 각 파트너사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37) 지역회사는 외국자본의 비율이 49%를 넘을 수 없음.

에서 국제상사회사(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ion)와 본질상 유사함.

- 제블 알리 자유무역지대 회사에 대한 규제는 제블 알리 자유 무역지대의 자체규정에 따름.
- 두바이에는 이 밖에도 상당수의 자유무역지대³⁸⁾가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합작투자 사업체가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회사가 제7편의 LLC임.
- 이는 50인 미만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북미와 유럽에서의 비상장주식회사(private company)와 매우 유사함.
- LLC는 보험업, 은행업, 금융투자업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두고 있음.
- 서구의 비상장 주식회사와 다른 점도 있으므로 UAE에서의 합작투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³⁹⁾

□ 주식합자회사(Share Commandite Company)

- 합작투자 파트너가 UAE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회사형태는 주식합자회사임.
- UAE 회사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합자법인은 최소한 1인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icipating partner)로 구성됨.

38) 예를 들어,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지대(Dubai Airport Free Zone), 두바이 기술·전자상거래·미디어 자유무역지대(Dubai Technology E-Commerce and Media Free Zone) 등.

39) 이 점에 있어서는 현지 로펌의 법률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무한책임파트너는 UAE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함.

- 국제 합작투자 사업체에서 UAE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파트너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주식합자회사 형태의 합작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UAE의 회사 규제법제는 부담스럽지 않고, 설립 이전 단계의 규제도 비교적 간단명료하여 설립신청서(application to incorporate)⁴⁰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함.

- 설립 이후의 규제도 단순하여 대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연간재무제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됨.
- 이에 더하여, 회사는 매년 주주의 이름과 개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및 당해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거래의 내역을 보여주는 ‘특별등록부(special register)’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또한, 회사는 매년 모든 이사의 이름과 국적, 이사회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회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이사회 의장은 연차주주총회(annual meeting)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안에 관한 보고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회사는 각 회계연도 말에 모든 주주의 상세정보와 그들의 지분 및 변경사항을 담고 있는 주주(주식)명부(share register)를 제출해야 함.

□ UAE 내의 합작투자 파트너가 두바이의 자유무역 지대에 그 연고를 두고자 할 경우, UAE의 법률자문사는 당해 자유무역 지대에 연

40) 설립신청서는 무엇보다도 누가 주주가 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제4편의 합작투자회사와는 달리 일반에 공개됨.

고를 두고 설립한 회사에 적용 가능한 회사 법제를 검토해야 함.

- 각각의 자유무역지대는 서로 다른 회사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지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UAE 상사회사법이 적용됨.
- 예를 들어, 두바이의 최신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회사는 마치 “국가 속의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일반 형사법과 샤리아법(Sharia's Law)을 제외한 UAE의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음.

□ 만약,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합작투자회사의 유형으로 ‘공동책임회사(joint liability company)’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이는 UAE의 일반적인 지역회사(local company)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소유권과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즉, 소유권의 최소한 51%는 UAE 국적자에게 있어야 하며, 최대 49%만이 외국 국적자에게 허용됨.
- 지배구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주식에 관한 지배는 물론, 회사지배구조에 관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 해당함.
- 또한, 이러한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중국에 법원에 의하여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UAE 내에서 국제 합작투자의 참여자가 공동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합작투자회사로서 선택 가능한 UAE의 회사 유형

□ 합작투자 사업의 연고지로서 UAE(특히, 두바이)를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기로 함.

□ UAE 회사법은 연방법으로서 사실상 UAE 영토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됨.

□ 두바이 자유무역 지대 회사(Dubai Free Zone Companies)나 그 밖의 자유무역 지대의 주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방이나 연방 차원의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자본이득세, 자본양도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두바이 자유무역 지대 회사는 주식발행에 있어서 인지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은 물론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있어서도 면세됨.

□ UAE에서 합작투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은 계약투자회사(contract venture),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또는 두바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자유무역 지대 내의 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합작투자 참여자가 선택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이 밖에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두바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몇 가지 유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본질적으로 합작투자 사업을 규제하는 룰(rule)은 각 파트너들 간의 협약에 의하고 보충적으로 UAE와 두바이의 법률에 의함.

- 따라서 UAE의 회사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함.

■ UAE에서 합작투자와 관련된 토지 이용

□ UAE법은 자국회사와 외국회사에 공히 토지의 임차(leasehold)에 관한 권한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fee simple)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이 발전·개선되는 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제에 불명확성이 존재함.

□ 이렇듯, 합작투자 사업이 토지의 임차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부동산 합작투자(Real Estate Joint Venture)

□ 상기의 논점은 UAE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다수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국제 부동산 합작투자에도 적용될 것임.

□ 부동산 합작투자의 경우, 프로젝트⁴¹⁾ 자체가 생산품(product)이며, 각 파트너는 자신만의 전문지식(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제조업 합작투자(Manufacturing Joint Venture)

□ 지난 10여 년간 두바이에서는 많은 제조업 활동이 있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제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허, 고유한 제조 과정을 보유한 외국 회사가 그 영업무대를 중동지역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UAE 국적자나 UAE의 지역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41) 예를 들어, 호텔, 관광지, 사회간접자본 등의 인프라시설 및 기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 합작투자 대상지역으로서의 UAE

- UAE의 장점
- UAE의 은행체계
- UAE의 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법제
- 사업허가(Business Licenses)

□ UAE의 장점

- UAE는 구소련 연방, 홍콩, 일본은 물론 유럽과 기타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음.
 - 사업상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항공편으로 인해 여러 국가를 경유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두바이와 기타 토후국에의 진·출입이 용이한 편임.
- 두바이는 영어권 지역으로서 런던과는 4시간(마이너스), 홍콩과는 8시간(플러스)의 시차가 있음.
 - 두바이와 UAE는 무엇보다 중동지역의 다른 국가와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오랜 전통의 정치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국가,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구소련연방 국가, 중국, 싱가포르, 체코 등과 수백 건에 이르는 조약(treaties), 협약(protocols) 및 협정(conventions)을 맺고 있음.
 - 또한, 마약거래금지, 돈세탁방지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모든 국제협약의 가맹국임.
- UAE는 걸프 만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수준의 교통시스템과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대규모 항만을 포함한 수로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관광업(tourism), 제조업(manufacturing)과 국제거래(international business)는 UAE의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는 석유, 가스 산업과 함께 3대 주요 산업임.
- UAE의 선진적인 인프라의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통신 시스템으로서 세계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함.

□ UAE의 은행체제

- UAE는 지역 내의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중앙은행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수한 은행과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음.
 - 금융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사업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조성으로서 이는 유럽의 여러 금융센터와 극동의 금융센터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목적이 있음.
- UAE에서 활동 중인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⁴²⁾은 국제거래에 필요한 모든 은행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거래당사자는 계좌를 열고 원하는 외국환으로 예치가 가능함.
 - UAE의 자국통화는 디르함(Dirham)이지만,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는 어떠한 통화(currency)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UAE에 지점을 둔 많은 외국은행들은 외국통화의 예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고 있음.
- UAE 중앙은행(the UAE Central Bank)에 의한 은행과 은행시스템에 대한 규제에 더하여 엄격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2002년에는 돈세탁을 범죄화하는 입법이 있었는데,⁴³⁾

42) 지역은행, 외국은행을 불문함

이 법에 의하면 마약(drug), 해적행위(piracy), 테러(terrorism), 불법무기거래(illegal arms trade), 절도(theft),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심지어 환경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돈은 돈세탁 활동으로 얻은 결과로 간주됨.

- 이러한 최근의 입법활동으로 UAE의 은행시스템은 선진 은행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었음.
- 특히, 40,000 디르함(Dirham)⁴⁴⁾을 초과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중앙은행에의 자동 보고시스템은 그 일례라 하겠음.

□ UAE의 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법제

- 상업활동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선진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2년 1월 22일, UAE 내에서의 돈세탁을 범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 이는 1988년 UN의 돈세탁 방지협약에 따른 의무의 준수를 위한 것으로서, UAE의 법제는 돈세탁 방지 법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제협약의 의무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사업허가(Business Licenses)

- 일단 합작투자 법인이 설립되면, 다른 국가에서의 합작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적절한 사업허가가 취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상기한 바와 같이 두바이와 UAE가 기업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취득해야 할 몇 가지 사업허가가 있으며, 두바이 통상산업위원회(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회사는 사업의 성질이나 연고와는 관

43) Federal Law No. (4) of 2002.

44) 대략, \$10,900 (U.S.).

계없이 최소한 무역허가(trade license)와 ‘business must’를 가져야 함.

3. UAE

■ UAE에서 합작투자협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진행과 고려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택

-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택
- 합작투자의 범위에 관한 협상
- 합작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 국제 합작투자사업에서의 고려 사항

□ 합작투자는 본질적으로 다수 기업문화의 결합과 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가치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 실패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⁴⁵⁾ 파트너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결정임.

- 국제적인 합작투자의 경우는 각기 다른 나라에 연고를 둔 파트너와의 연합으로서 그 선택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합작투자 사업체의 연고가 외국인 경우, 연고지와 참여 파트너를 결정하기에 앞서 숙달된 노동력에의 접근성, 언어와 투자 상의 장벽, 운송상의 제한, 경영전문성, 국제 산업재산 보호, 기술적인 기준 등과 같이 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고려해야 함.

45) 많은 합작투자가 실패를 경험해 왔으며, 그 비율은 75%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

□ 특히, 주요보증인(lead sponsor)⁴⁶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항을 각 파트너로부터 확보하는 것임.

- 자본(capital)
- 경영전문성(Management Expertise)
- 고객기반(Customer Base)
- 특수기술(Special Technology)
- 효율적 사업 운영(An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 목표시장에서의 점유율(Market Share in the Target Market)
- 우수한 사업상의 평판(Superior Business Reputation)
- 핵심 노동력(Key Individuals)
- 유통체계(Distribution Channels)

□ 상기의 주요요소를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보증인에게는 참여를 희망하는 파트너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요구됨.

- 참여 희망 파트너의 명단이 확인되면, 독립적인 조사(independent research)를 비롯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각 파트너들의 참여적격을 판단함.

□ 참여희망자들에 대한 투자적격 판단이 끝나면, 주요 투자자의 기업문화와의 융화여부를 판단함.

□ 다음 단계로, 각자의 파트너업체에서 합작투자사업의 운영과 파트너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재를 선발해야 함.

■ 합작투자의 범위에 관한 협상

□ 파트너가 선정되면 각 파트너사는 합작투자협상의 모든 과정에

46) 합작투자의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연고지의 주요 은행이 맡고 있음.

결친 의사결정에 관여할 핵심인재를 그들의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선정하고, 당사 회사 내에서는 대변인을 선임함.

- 국제합작투자인 경우, 조세문제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각 파트너는 그들의 본래 사업에 정통한 조세 자문관(tax advisor)을 선정하여 협상과정에 투입해야 함.
- 국제합작투자사업(international joint venture transaction)의 경우, ‘협상위원회(negotiating committee)’의 설립은 대단히 유용하며, 협상 파트너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대변인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각 파트너의 법률대리인이거나 사업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임.
-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상위원회는 정식의 합자투자협약(Joint Venture Agreement)에 의하여 투자계약의 성립후, 각각의 파트너를 하나의 사업체로 무난히 전환시킬 역할을 담당하는 ‘전환계획위원회(transition planning committee)’가 됨.

□ 합작투자 협상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협상의 일정, 협약의 종류 및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마련하는 것임.

- 의향서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2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배타성(Exclusivity) : 협상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는 의향서가 효력을 잃거나(주로 시효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합작투자협약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사한 다른 합작투자사업에의 참여를 시도하거나 제3자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야 함.

-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 모든 협상 당사자는 협상과정에서 교환한 문서와 제공한 정보 및 논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 제공, 복사 또는 분배하거나 합작투자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야 함.

□ 의향서가 마련되면 전환계획위원회는 모든 논점(issue)을 해결하고 법적 서류를 마련하는 책무를 맡음.

- 이 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요논점에 집중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소한 논점에 집착해서는 안 됨.
- 합작투자사업의 정수(essence)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각 파트너는 각자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법률적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합작투자에서 자신의 목적과 큰 관계가 없는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파트너에게 양보해야 함.

■ 합작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 ‘조세중립성’ 이슈와 당해 합작투자 사업이 가지는 고유한 사업적 이슈에 더하여 각 파트너는 다음에 열거된 사전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슈에 직면하게 됨.

- 거래와 관련 이슈들을 수행할 통화(currency) : 평가절하 위험, 환율변동, 통화관리·통제 등
- 합자투자 사업 및 관련업자들에 적용 가능한 반독점 법제: 미국에서의 합병 前 통지의무, 시장지배, 끼워팔기, 상호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 등
- 합작투자 사업체의 유형(형태): 합명회사(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기업연합(syndicate) 등

- 의무적인 자금제공 : 현재와 미래
- 합작투자 사업체에 대한 경영통제(management control)
- 분쟁해결방안
- 각 참여자의 연고 국가의 정부에 의한 잠재적인 간섭
- 다양한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인·허가, 노하우(know-how), 산업재산
- 합작투자 사업체가 청산(dissolution)될 경우에 대한 방안
- 여러 파트너 간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융통성
- 합작투자 사업체나 일부 파트너에 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 제한 법제
- 합작투자 사업체를 규제할 법제에 대한 사업 참여자 교육
- 합작투자협약과 관련 문서의 시행가능성
-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합작투자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잠재적인 교착상태(deadlock)
- 해산·청산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제에 대한 평가
- 합작투자 지분의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
- 합작투자 사업체와 그 자사의 운영에 대한 경영통제 및 이사회 구성, 핵심 경영진의 선정
- 합작투자 사업으로 인한 상품과 용역의 유통협약의 마련
- 사업체의 경영진이 부담하는 재정적 제한의 해결: 비용, 처분권, 여신한도, 사업체 자산의 담보 등

3. UAE에서 합작투자협정의 진행

- 각각의 합작투자 참여자가 당해 사업 이외에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
- 각 참여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진술(representations)과 보증(warranties)
- 사업체의 영업활동, 자산 및 핵심 인재에 대한 보험
- 각 파트너 간 비경쟁 서약(non-competition covenant)과 그 지리적 한계
- 합작투자 사업의 해산·청산의 경우, 합작투자로 인해 얻은 새로운 기술, 상표권, 특허권, 비밀공정 및 기타 노하우(know-how)의 소유권
- 합작투자 사업의 지분
- 합작투자 사업을 수행할 국가
- 합작투자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과 그것이 각 파트너社의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등에 관한 사항 등 사소한 것이라도 향후 발생할 불협화음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임해야 함.
- 합작투자 사업에 기여할 핵심 인재의 이민에 관한 사항 : 비자 문제 등
- 합작투자 사업체가 수입하거나 생산한 물건에 대한 관세(customs duty)와 물품세(commodity tax)
- 사업체의 핵심 경영진과의 근로계약은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지의 소유권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

□ 합작투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이슈는 사실상 대단히 광범위하며, 상기의 사항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당해 합작투자 사업체에 고유한 특별한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참여자의 연고가 되는 시장에서 각 각 독립한 특허(patent)로 다루어 질 수 있는 2개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 적용될 기술적 기준의 명시, 특허권 보호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유권 등
- 주지의 상품을 새로운 시장에 출시: 이미 등록되어 있고, 잘 알려진 2개의 상표를 결합하여 “공동의” 상표를 사용함.
- 외국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 어느 나라의 건축규정을 따를 것인지, 건축자재 등

□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합작투자의 협상에서부터 계약 성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임.

■ 국제 합작투자사업에서의 고려 사항

□ 엄밀한 의미에서 각각의 합작투자사업은 존속기간, 주요논점 및 관할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선례(precedent)도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됨.

-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으며, 모델로 간주할 수 있는 구성이나 협약은 있을 수 없음.

□ 그러나, 국제합작투자가 가지는 공통점으로 참여자가 다수의 관할권(국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할권은 모두 다른 세율(tax rate)을 가질 것이라는 점임.

- 합작투자 참여자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합작투자 사업체에 대한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각 파트너에게 합작투자로 실현한 각자의 이윤에 대하여 연고지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됨.
-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상적인 목표는 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합작투자를 구성하는 것임.
- UAE에서의 합작투자 사업은 다수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s)를 이용하거나 당국으로부터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UAE는 중동지역에 다수의 ‘역외·조세우대(offshore)’ 관할권⁴⁷⁾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UAE는 경험이 많고 우수한 인프라⁴⁸⁾를 가지고 있음.
 - UAE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서 모인 기술적으로 숙련된 고학력의 인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 국제합작투자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합작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의 부담(regulatory burden)을 최소화하는 것임.

- UAE,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대단히 ‘기업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사업 경향과

47) 바베이도(Barbados), 바하마(Bahamas),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먼군도(Cayman Islands), 모리셔스(Mauritius), 터크스케이커스 제도(Turks & Caicos Islands) 등

48)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각 국의 로펌과 회계법인, 발달된 육상, 해상, 항공 유통 체계, 금융기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북미 및 다른 중동국가 시장에서의 용이한 진출·입 등

관련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법제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음.

4.

▣ UAE는 회사법제, 조세제도, 토지이용 관계, 은행체계 등 규제적·지리적으로 합작투자 사업을 위한 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임.

▣ 그러나, 우호적인 법제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샤리아 법(Sharia's Law)의 존재나 회사의 형태에 있어서 서구 일반의 개념과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ART III :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1.

■ UAE의 조세제도 개요

□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나 회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조세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필수적임.

○ 위 평가에는 적용 가능한 세목과 관세 및 세율뿐 아니라 면세나 감경에 대한 조사도 포함됨.

○ 본 보고서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에서의 투자나 거래행위가 조세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UAE의 세제와 법률에 관한 일반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결론적으로, UAE는 대인세(對人稅; personal taxation)⁴⁹⁾나 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의 부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처로서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임.

○ 즉, UAE에서는 개인이나 회사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과되지 않고, 극히 소수의 산업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과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관대한 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음.

○ 또한, UAE는 현재 27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상태임.

49) 소득세를 비롯한 법인세, 주민세 및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를 의미함.

■ UAE의 경제 현황

□ UAE 연방은 1971년에 수립되었으며, 7개의 각 토후국(emirate)⁵⁰⁾은 연방 헌법의 의하여 각자 독립된 삼권을 행사함.

□ UAE는 세계 최상위급의 1인당 소득수준과 연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개방 경제체제로서 1973년 이래 높은 수준을 삶의 질을 겸비한 현대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UAE의 각 회원국은 국제 사회에 개방된 무역정책과 시장경제 및 민간부문의 역할과 주도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을 천명한 바 있음.

□ 실제로 걸프만 지역에서 외채가 없는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경제체제로 인식되고 있음.

- 「BKR International」⁵¹⁾의 분석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15개 국가와 기타 중동 국가들 중에서 UAE는 외국은행의 지점과 호텔 및 주요 석유·가스회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

2. UAE

■ 세금우대지역으로서의 UAE

□ UAE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의 정치조직으로서 연방 헌법이나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자 독립적인 사법권과 경찰권을 행사함.

50) 7개의 토후국은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라스알카이마(Ras al-Khaymah), 아즈만(Ajman), 푸자이라(Fujairah), 움무 알 꾸와인(Umm al-Quwain)으로 구성됨.

51) BKR International은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90여개의 회계 법인을 회원사로 둔 컨설팅업계의 협회임.

- 그러나 각 토후국이 지방자치와 자연자원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보건 및 교육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함.

□ 세액공제와 세금의 경감 및 면제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 UAE의 조세법이 기본적으로 세금의 부과를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하위 법령들은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연방 차원의 조세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토후국이 각자의 세법을 가지고 있음.
- UAE에서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⁵²⁾,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법인세(corporate tax)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아부다비⁵³⁾, 두바이⁵⁴⁾, 샤르자⁵⁵⁾는 일반적인 법인세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회사와 외국은행의 지점만이 과세 대상임.
 - 상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UAE의 주요 조세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조세가 의미를 가짐.

- 대인세
- 법인세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의 법인세)
- 재산세

52) 자산의 매각을 통한 이익에 대한 세금

53) The Abu Dhabi Income Tax Decree of 1965

54) The Dubai Income Tax Decree of 1969

55) The Sharja Income Tax Decree of 1968

■ 대인세

□ 개인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UAE 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치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service charge)가 부과됨.

□ 관리비는 토후국에 따라 다르며, 식당에서는 음식값의 5%~10%가, 호텔에서는 하루 객실료의 10%~15%가 관리비의 명목으로 소비자의 계산서에 포함되고, 자치단체는 이를 식당과 호텔로부터 징수함.

■ 법인세

□ 법인세에 관한 연방 차원의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토후국이 각자의 세법을 가지고 있음.

□ 아부다비(Abu Dhabi)

○ 아부다비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거래세(sales tax),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음.

- 관련 채굴협약이 정하는 세율에 따른 석유와 가스회사에 대한 세금
- 외국 은행의 지점이 거둔 연 수익에 대한 정액 과세; 그리고
- 호텔과 위락시설에 대한 정액 서비스세

○ 그러나 아부다비 소득세법(Abu Dhabi Income Tax Decree of 1965)에 따르면, 물건의 제조를 포함하여 아부다비 내에서 거래나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소득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 받음.

- 1,000,000 디르함(Dirham)⁵⁶⁾ 미만 - 0%

56) 디르함(Dirham)은 UAE의 화폐단위로서 현재 미국 \$1가 대략 3.67 Dirham으로 거래됨.

2. UAE 조세법상 조세의 종류

- 1,000,000 디르함(Dirham) 이상 ~ 2,000,000 디르함(Dirham) 미만
 - 10%
 - 2,000,000 디르함(Dirham) 이상 ~ 3,000,000 디르함(Dirham) 미만
 - 20%
 - 3,000,000 디르함(Dirham) 이상 ~ 4,000,000 디르함(Dirham) 미만
 - 30%
 - 4,000,000 디르함(Dirham) 이상 ~ 5,000,000 디르함(Dirham) 미만
 - 40%
 - 5,000,000 디르함(Dirham) 이상 - 55%
- 과세대상자(chargeable person)라 함은 UAE 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직접 또는 다른 법인의 대리인(agency)을 통하여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법인(법인화된 장소를 불문함) 또는 모든 지점을 의미함.
- 거래를 하는 법인이 2개소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지점들은 각자 독립한 과세대상이 됨.
 - 母子관계에 있는 회사 중 자회사가 UAE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회사가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음.
-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한다(carrying on trade or business)”라 함은,
- UAE 내에서 재화 또는 그와 관련된 권리를 파는 행위;
 - UAE 내에서 제조, 산업, 또는 상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행위;
 - UAE 내에서 설비를 하는 행위; 또는
 - UAE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단순히 재화나 그와 관련된 권리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외)를 의미함.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자가 지출한 원가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됨.
 - 원가와 기타 비용에는 ① 재화의 구입비용, ② 사업체 운영비용, ③ 감가상각준비금, ④ 유·무형 자산의 노후 및 고갈과 ⑤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자가 부담한 손실이 포함됨.

□ 두바이(Dubai)

- 두바이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
 - 세율은 소득과 연동되어 최대 55%까지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회사와 외국은행의 지점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두바이 소득세법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세율과 과세대상자, 거래나 사업행위의 정의, 과세 가능한 소득의 계산 등은 아부다비 소득세법과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과 석유관련 회사⁵⁷⁾들을 제외한 두바이 내의 어떠한 사업장도 법인세를 내지 않음.
 - 석유관련 회사는 최대 55%, 은행은 20%의 법인세를 납부함.
 - 석유관련 회사는 당해 회사가 체결한 채굴협약을 근거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반면, 은행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함.
 - 석유관련 회사는 생산량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함.
- 관세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면제조항도 다수 있음. 따라서 기계, 원자재 및 부품을 들여오는 제조업자들에게 유리함.

□ 샤르자(Sharjah)

- 샤르자 소득세법이 정하는 세율, 과세대상자 및 거래나 사업행

57) 석유회사, 가스회사 및 석유화학 회사

위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소득세법과 큰 차이가 없음.

- 샤프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샤프라 내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사람은 누구나 소득세를 부담함.
-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은행의 지점과 석유관련 회사는 소득과 연동되는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가 가능한 소득의 범위와 계산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소득세법과 차이가 없음.
- 관세는 샤프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재화에 5%의 세율로 부과됨.

■ 재산세

□ 대부분의 토후국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연 임차료의 5%를, 상업용 재산의 경우 10%의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함.

□ 아부다비에서는 사업허가를 내주거나 갱신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함.

3. UAE

■ 조세분쟁의 해결

□ 국제거래분야에 있어서 조세 전문가들은 UAE의 각 토후국이 국제 조세분쟁, 특히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관한 해석상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국제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음.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 조세위원회는 쌍방 또는 다수당사자 간의 조세협약에 있어서 국제 조세분쟁

에 대비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의 채택을 권고한 바 있음.

- 이는 공평하고 비용효율적인 조세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세계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증진하는 방안도 포함함.

■ UAE의 면세지역

□ UAE는 자유무역 지대(free zones)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음.

- UAE 내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으로서 주로 영업허가를 위한 수수료를 제외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이윤에 대한 세금과 의무를 면제해 주었음.
- 또한, 이윤의 송금과 자본의 본국송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관세도 특별산업지대(special industrial zones) 내에 조성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면제됨.

□ 아부다비 자유무역 지대(Abu Dhabi Free Zone)

- 1996년 7월 11일, 당시 UAE의 대통령이었던 셰이크 하자 빈 자예드 알 나하얀(H.H.Sheikh Hazza Bin Zayed Al-Nahyan)은 30억 달러 규모의 아부다비 자유무역 지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음.
- 주요한 재정적 유인책으로서
 - 수입·수출세의 100% 면세
 - 자본과 이윤의 자유로운 본국 송환
 - 최초 15년간 법인세 면제⁵⁸⁾
 - 개인소득세 면제

58) 이는 최초의 15년이 경과한 후, 다시 그로부터 15년을 연장할 수 있음

- 두바이 자유무역 지대(Dubai Free Zones)
- 자발 알리 자유무역 지대(Jebel Ali Free Zone; JAFZ)
-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 지대(The Dubai Airport Free Zone; DAFZ)
- 샤르자 자유무역 지대(The Sharjah Free Zones)
 - 샤르자 공항 국제 자유무역 지대(Sharjah Airport International Free Zone; SAIF-Zone)
 - 재정적 유인책(Financial Incentives)
 - 함리야 자유무역 지대(Hamriyah Free-Zone)
 - 면 세

4.

■ UAE는 최첨단의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상업허브로서 이에 대한 투자와 영업활동의 전망은 대단히 밝음.

■ 특히, 대인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매력적임.

참 고 문 헌

- 배희연,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산업연구원, UN 안보리 결의 1540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2005
- 전병목, 기은선, 정희선, 조진권, 박임수,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조희문, “UAE(두바이) 외국인 투자 및 금융관련 법제 연구”, 법제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 3. 15
-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Embass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ashington D.C., 2009
- “Business Guide to the Arab Gulf: United Arab Emirates”, Bayliss
Associate Pty Limited, 2005
- “Companies Under the UAE Commercial Companies Law: Federal Law
No. (8) of 1984 (as amended) & Other Business Entities in
the UAE”, Al Tamimi & Company, 2009
- “Construction Law”, Al Tamimi & Company, 2009
- Christopher M. Blanchard & Paul K. Kerr, “The United Arab Emirates
Nuclear Program and Proposed U.S. Nuclear Cooper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참 고 문 헌

- “Establishing Offshore Companies in the Jebel Ali Free Zone”, Al Tamimi & Company, 2009
- IAEA,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 (2007)
- “International Agreements, Conventions & Protocols Signed by the Government of the UAE 1971-2004”, Al Tamimi & Company, 2009
- “Islamic Finance: A UAE Legal Perspective”, Al Tamimi & Company, 2009
- “Joint Venture Theory & Practice in the UAE”, Al Tamimi & Company, 2009
- “Labour Law in the UAE”, Al Tamimi & Company, 2009
- “Plan Abu Dhabi 2030: Urban Structure Framework Plan”, Abu Dhabi Urban Planning Council, 2007
- “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Government of the UAE, 2007
- “Property”, Al Tamimi & Company, 2009
- “Property Law in Jordan, Kingdom of Saudi Arabia, Qatar, United Arab Emirates”, Al Tamimi & Company, 2009
- “Taxation Law in the UAE”, Al Tamimi & Company, 2009
- “UAE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 Al Tamimi & Company, 2009
- “United Arab Emirates Yearbook 2009E”, Department of External Information, UAE, 2009